

#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8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6. 15.

발의자 : 고영인 · 권인숙 · 김홍걸

박광온 · 서영교 · 오영훈

이용우 · 전용기 · 조승래

최종윤 · 홍기원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,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,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더라고 이를 처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,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).

##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

제4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의 대가를 주고받거나 주고

받을 것을 약속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보건 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1. · 2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39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</u> 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4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44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의 대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</u>
2. · 3. (생 략) ②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